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운용역 변경	모펀드 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대상 자산	환매 수수료 삭제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○	-	○	-	-	10)
2	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	-	-	-	-
3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-	○	-	○	-	-	8), 9), 10)
4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	-	○	-	-	-	-	-	-
5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-	○	○	주1)	-	-	○	10)
6	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주1)	-	-	-	10)
7	미래에셋상생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○	-	-	-	-	-	-
8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	-	○	-	-	-	-	-	-
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	-	○	-	-	-	-	-	-
10	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○	-	-	-	-	-	-
11	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-	○	○	○	8), 9), 10)
12	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13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-	-	-
14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, 11)
15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16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, 11)
17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18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0), 11)
19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0), 11)
20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1)
21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0)
22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0), 11)

23	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주3), 주4)	-	○	○	10), 11)
24	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, 11)
25	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, 11)
27	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28	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29	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-	-	-
30	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31	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, 11)
32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33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○	○	10)
34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2)	-	○	○	10)
35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2)	-	-	-	-
36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2)	-	○	○	10), 11)
37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2)	-	○	○	10)
38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주2)	-	○	○	10)
3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주5), 주6)	-	-	-	-
40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주5), 주6)	-	-	-	10)
41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10)
42	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	-
43	미래에셋합리적인시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-	-	○	10)

2. 변경 사항:

- 1) 운용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1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2월 17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한섭</u>	<u>박현수</u>

-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한섭</u>	<u>박현수</u>

-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서재춘, <u>정한섭</u>	서재춘, <u>송시형</u>

2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한섭</u>	<u>송시형</u>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

-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
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한섭</u> , 유의형	<u>박현수</u> , 유의형

- 미래에셋상생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-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문일권</u>	<u>박현수</u>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 1)
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

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주2)

미래에셋퇴직연금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3)

미래에셋퇴직연금단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4)

미래에셋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5)

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6)

미래에셋퇴직플랜장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 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 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 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90일 이상 : 없음</p> <p>2. 종류F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90일 이상 : 없음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-i, F]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90 일 이상 : 없음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슬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 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 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<u>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C1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2. 종류C2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C3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4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C5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6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7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, C-e, CG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<u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p><u>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2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50%</u></p> <p><u>3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1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</u> <u>2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50%</u> <u>3년 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 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0.49</u>	<u>9.43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2	2	<u>23.74</u>	<u>22.99</u>
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0.77</u>	<u>1.38</u>
미래에셋슬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3</u>	<u>4.68</u>

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82</u>	<u>7.61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51</u>	<u>7.03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3	3	<u>10.2</u>	<u>10.0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75</u>	<u>9.58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74</u>	<u>3.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4.5</u>	<u>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49</u>	<u>6.7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61</u>	<u>8.6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2.75</u>	<u>12.54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1.4</u>	<u>2.0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78</u>	<u>3.8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49</u>	<u>6.9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57</u>	<u>8.7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66</u>	<u>3.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5.88</u>	<u>6.5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71</u>	<u>8.2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1.5</u>	<u>11.8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75</u>	<u>8.2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74</u>	<u>3.8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74</u>	<u>7.1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92</u>	<u>9.0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3.31</u>	<u>13</u>
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-	<u>10.55</u>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

	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나. <삭제>
--	--	---------

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<u>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11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u>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<u>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u>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송시형 팀장

2) 주요경력

(07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

2. 운용현황(2023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 3 억만들기술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3-12-31	82,425
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20-05-20	13,653

3. 운용성과(2023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 3 억만들기술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6.79	4.24	-1.17	293.51
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8.19	4.29	-0.67	31.65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박현수 매니저

2) 주요경력

(16년~17년)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(17년~18년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리서치팀

(18년~20년) 하나UBS자산운용 리서치팀

(20년~22년) 미래에셋자산운용

2. 운용현황(2023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3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